

# 이사회 운영규정

일부개정 2015. 07. 14

일부개정 2022. 10. 26

일부개정 2025. 02. 25

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

### 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올바이오파마(주)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·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 3 조(기능)

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### 제 4 조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이사회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설계·운영·평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진다.

### 제 5 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 인을 두되, 간사는 직제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

## 제 6 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말 익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.

## 제 7 조(소집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대로 소집권자가 된다.
- ② 간사는 회의일 5 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1 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고,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 제 8 조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의장이 부재중 이거나 유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사내이사의 순으로 그직무를 대행 한다.

## 제 9 조(의사 및 결의)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. 단,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시에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당해 안전의 담당사내이사, 집행임원 또는 부서장급 관계직원이 하도록 한다.

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 10 조(부의사항)

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- (2)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
- (3)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
### 2. 재무 및 투자에 관한 사항

- (1)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(2)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(3) 자기자본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(4) 자기자본 10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 신설
- (5) 자산총액 10% 이상 유형자산의 취득, 처분
- (6) 자기자본 5% 이상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- (7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에 관한 사항
- (8) 장기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
### 3. 중요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
- (3) 중요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- (4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
- (5) 배당에 관한 사항

#### 4. 기타

(1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
(2) 위 각호 이외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

#### 제 10 조의 1(부의절차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제 7 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회의 개최일 7 일 전 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제 11 조(의사록)

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7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